전공교육과정위원회 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 학과(부)별 전공교육과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 ① 각 학과(부) 별 전공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과(부) 전공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.
 - ② 학부(과) 전공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(부)장이 되고 위원은 학과(부)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공 담당 교과목 교원(비전임, 강사) 등의 대상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.
 - 단, 전공교육과정개편에 대한 사회적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외부전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- ③ 위원회의 위촉은 각 학과(부)장이 하되, 외부전문인사를 위촉할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.
 - ④ 학과별 상황 및 시대적 변화 및 요구에 따라 위원들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- 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학과별로 정하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전공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 에 회부하여 상정한다.
 - 1. 학과(부)의 교육목적·체계 및 전공능력 설정
 - 2.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학과(부) 전공교육과정의 개발·편성 및 운영
 - 3. 학과(부) 전공관련 비교과교육과정 개발·편성 및 운영
 - 4. 학과(부)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
 - 5. 학과(부) 전공교육과정 및 비교과교육과정 성과분석 및 평가 후 결과에 대한 주기적인 환 류·보완
 - 6. 학과(부) 전공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교수·학습지원
 - 7. 기타 학과(부) 전공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**제5조(회의)**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제6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각 학과에서 관장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